「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O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8월 13일, 평창군수

O 회부일자 : 2019년 8월 22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4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19년 8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안전건설과장)

가. 제안이유

O 현행 조례 내 관련법 개정 사항 및 「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「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여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·육성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O 조례안 명칭변경(제명)

- 현행 : 『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』

- 변경 : 『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』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분 할 발주 허용 범위를 조례로 제한 하는 부분 변경(안 제4조의 2)

- O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하한선 상향조정으로 지역건설업체 수주기반 확대 (안 제4조의3)
- 지역건설산업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규정 강화 (안 제4조의 5 ~ 제4조의 7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명칭을 『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』에서 『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』로 변경하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분할발주 허용 범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 또한 안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, 안전·보건 및 재해 예방과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을 신설규정 하였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지역건설산업 수주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지역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"를 "평창군 지역건설산 업 활성화 지원 조례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이라 함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"를 "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 또는"으로, "의하여"를 "따라"로, "수행하는 건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"을 "경영하는 건설업, 건설용역업, 공사업, 건설자재 제조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라 함은"을 "란"으로, "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"을 "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"으로, "건설산업을 경영하는"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.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지역건설근로자"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 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.

-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이라 한다)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, 건설 신기술 및 신 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조의2(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평창 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
 - 2.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
 - 3.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· 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
 - 4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3조의3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 - 2.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 - 3.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·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

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 중 "과당경쟁을자제하고"를 "과당경쟁을 자제하고"로 한다.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의2(분할발주 등)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·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8조제6항"으로, "해당 공사"를 "건설공사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군수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9조 각 항 단서 및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- 1.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
- 2.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

-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.
- 제4조의4 중 "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" 를 "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"으로 한다.
-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조의5(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)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 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 -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4조의6(지역건설근로자 안전·보건 및 재해 예방)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·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.
 - 1. 안전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,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
 - 2.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 · 보관
 - 3.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
- 제4조의7(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)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 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.
 - ② 건설업자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

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"부의하는"을 "회의에 부치는"으로 한다. 제10조제1항 중 "때에이"를 "경우에 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과반수의 찬성"을 "과반수의 찬성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명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 조례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-----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지역건설산업" 이라 함은 1. ----- <u>이란 「건설산</u> <u>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에</u> <u>업기본법」 제2조 또는 ----</u>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----- 따라 -----등을 하고 평창군(이하 "군"이 라한다) 내에서 수행하는 건 ----- 경영하는 건 설공사업 또는 건설용역업을 설업, 건설용역업, 공사업, 건 말한다. 설자재 제조업-----2. "지역건설산업체" 라 함은 법 2. ----- <u>란</u> -----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 --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--인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 ----- 건설산업을 을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. 경영하는 -----다만,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 <단서 신설> 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

<신 설>

하 "군수"이라 한다)는 지역건 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 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, 건설 신 기 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・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추진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

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 의 범위에서 제외한다.

3. "지역건설근로자"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 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 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 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 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 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 다.

제3조(군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 제3조(군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 하 "군수"이라 한다)는 지역건 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 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, 건설 신기 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2(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 획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담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
- 2.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
- 3.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·수 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
- 4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3조의3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 건설산업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
 - 2.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 항
 - 3.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 항
 - 4.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

 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·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 상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지 지 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 한 과당경쟁을자제하고,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 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분할발주 등) ① 군수는 제4조의2(분할발주 등) 군수는 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 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 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·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- 1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|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 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 상의 사업
- 2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| 에 따라 지역제한

| 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|
|-------------------|
| |
| <u>과당경쟁을 자제하고</u> |
| |
| |
| |
| |

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 할 수 있다.

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

참여 권장) 군수는 「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 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

제4조의3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제4조의3(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) 🛈 -- 「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」제2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88조제6항-- 건설공사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군수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9조 각 항 단서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 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 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 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 다.

제4조의4(지역내 생산제품·장비·인력사용의 권장)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1.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
- 2.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경우 70퍼센트 이상
-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.

제4조의4(지역내 생산제품・장비 제4조의4(지역내 생산제품・장비

- · 인력사용의 권장) -----
- _____
-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-----

- 제4조의5(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)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 -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 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 다.
- 제4조의6(지역건설근로자 안전· 보건 및 재해 예방) 군수는 지

역건설근로자의 안전·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안전·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, 교육 및 무재해 운 동 추진
- 2.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・보관
- 3.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

제4조의7(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)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 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 현장에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② 건설업자는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저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~ 5. (생략)
<<u>신</u>설>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<u>부의하는</u>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저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연 2회(상·하반기)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<u>과반수의찬성</u>으로 의 결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|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 |
|-------------------|
| 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 |
| 도록 노력한다. |
| 제6조(기능) |
| |
| 1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6.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|
|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|
| 관한 사항 |
| <u>7</u> |
| 회의에 부치는 |
| |
| 제10조(회의) ① |
| |
| |
| |
| 경우 |
| 에 이 |
| ② |
| |
| <u>과반수의 찬성</u> |
| <u>.</u> |
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